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127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안일자 : 2019년 10월 16일
- 라. 회부일자 : 2019년 10월 22일

2. 제안이유

- 가. 지역경제 주체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일자리창출, 노사관계안정 등 서울시의 경제사회 현안들을 개선하기 위한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하고, 노동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사회경제, 노동시장 등 분야별 구체적 사안을 전문적으로 협의하고 해결하는 의제개발·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 나. 노사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협의체로서 노사민정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임기,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노사민정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부위원장제도 신설 및 위원임기, 해촉,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안 제4조의2, 제4조의3,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등)
- 나. 노동시장의 분야별, 전문적,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의제개발·조정위원회, 의제별·업종별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둠(안 제7조)
- 다. 협의회 회의와 운영지원 및 의제개발·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 발굴 및 관리, 협의회 위임사무 수행을 위한 사무국 설치조항 신설(안 제13조)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분과위원회와 의제개발·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음.

나.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현황

- 서울시는 구(舊)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00년부터 노동자, 사용자, 서울시가 상호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동정책 등을 협의하기 위해 ‘노사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해 왔음.

- 이후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령」의 제정·시행(2010년)으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종전 노사정협의회는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로 개편되고 근거 조례가 제정(2011.7.28.)되었음.

- 협의회는 ▶ 지역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 노사민정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할 수 있는 법적 기구임.

- 이러한 법적 권한부여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의 운영실적은 대단히 미흡한 바,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실제 회의가 개최된 것은 2014년, 2016년 두 번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서면회의로 대체하거나 개최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화되었음.

〈최근 5년간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개최 현황〉

개최년도	개최일자	회의내용 및 운영활동	비고
2015	2015.7.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노사정협의회 운영세칙 일부개정 ○ 서울모델협의회 참여기관·인원 확대 - 6개기관 18명→11개기관 28명 	서면회의
2016	2016.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세칙 일부개정 - 실무위원회 설치 등 ○ 노사민정협의회 합의문 채택 	

개최년도	개최일자	회의내용 및 운영활동	비고
2017	2017.1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참여기관·인원 확대 - 11개기관 28명→13개기관 33명 ○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 추천 - 노광표 위원장 	서면회의
2018		회의 개최 실적 없음	
2019		회의 개최 실적 없음	

- 이에 2016년 조례를 개정해 노사 간 참여한 의견대립을 실무적으로 조정하여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는 ‘실무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으나, 협의회(본회의) 운영 활성화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다. 협의회 위원 자격 등 정비(안 제4조제2항·제10조제3항)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법정기구인 ‘협의회’의 설치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바, 이와 같은 기관위임 사무는 「지방자치법」상의 법률우위의 원칙에 따라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음.
- 현행 조례 제4조제2항은 시장이 위촉하는 협의회 위원의 자격을 법령의 규정 외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확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법제처에서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위촉규정이란 의견을 제시하였음.

<p>「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p>	<p>「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생략)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동자 대표 2. 사용자 대표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5.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6. <u>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u> <p>③~⑤ (생략)</p>	<p>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①~③ (생략) ④ 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p>⑤~⑥ (생략)</p>

- 또한 제10조제3항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면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대하여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역시 법률의 위임없이 관내 노동현장에 대한 의무부과와 규제로 오인될 여지가 있어 삭제하고 있음.

- 법령의 근거 없이 노동단체 등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협의회 위원 구성에 단체장의 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법령의 입법 취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기에는 법제처의 논리가 부족해 보임.

라. 분과위원회 신설 (안 제7조)

- 안 제7조는 현행 노사분규 발생과 해소방안을 협의하는 ‘특별위원회’를 확장해 노동시장, 사회, 경제 등 분야별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협의를 하는 ‘의제개발·조정위원회’와 ‘의제별·업종별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협의회는 특별위원회로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사가 참여하는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를 두고 있음.
- 협의회는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하부위원회 활동이 전제된다는 점은 이해하나, 현행 특별위원회나 실무위원회와 기능과 역할에 있어 어떤 차별성을 갖는지 불명확함.

마. 사무국 설치·직원 파견 (안 제13조·제14조)

- 안 제13조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의 설치와 조직, 사무,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를, 안 제14조는 사무국에 공무원과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직원 파견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자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재 협의회가 설치된 155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40개소(25.8%, 광역 12, 기초 28)가 사무국을 설치·운영 중임[참고자료].
- 그러나 연 평균 1회도 개최되지 않는 협의회 운영 사무를 위해 별도의 사무국 설치가 필요한지 의문이 들며, 협의회 기능부터 정상화한 후 사무국을 설치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바. 협의회 운영관련 조항 정비

(안 제4조제5항·제4조의2·제4조의3·제5조제2항·제6조제3항)

- 안 제4조의2는 공무원, 시의원 등 일부 위원의 임기와 재임기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안 제4조3은 위원회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있음.
- 또한 한시적으로 위촉되는 수시위원을 폐지하고, 부위원장제도를 신설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4조제5항, 안 제5조제2항).
- 안 제6조제3항은 의결정족수를 완화(출석 3분의2 이상→ 과반수)하고, 의결 시 대표위원의 2분의1 이상 출석의무규정을 삭제하였음.

- 이상의 협의회 운영 관련 규정의 정비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

사. 종합의견

- 개정안은 의제개발·조정위원회와 의제별·업종별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사무국을 설치해 노사민정협의회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임.
- 그러나 현행 특별위원회나 실무위원회 제도와 신설되는 분과위원회의 차별성을 찾기 어렵고, 협의회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현 시기에 사무국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 법률의 위임없이 노동단체 등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 등에 대한 법제처의 위법성 제시 문제를 해소하고 협의회 위원 자격을 정비해 운영관련 조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원활한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담당 조사관	연락처
김나래	02-2180-8057

[참고자료]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현황(2019.9.)

구분	지역	운영방식	운영주체	운영인력	
광역 (12개소)	1	부산광역시	노사단체 위탁운영	한노부산본부	전담 1명
	2	대구광역시	노사단체 위탁운영	대구경총	전담 1명
	3	인천광역시	노사단체 위탁운영	한노인천본부	전담 2명
	4	광주광역시	노사단체 위탁운영	광주경총	전담 1명
	5	세종특별자치시	지자체 내 설치 운영	전담인력 배치	전담 1명
	6	경기도	노사단체 위탁운영	경기경총	전담 2명
	7	강원도	노사단체 위탁운영	한노강원본부	전담 1명
	8	충청북도	지자체 내 설치 운영	전담인력 배치	전담 1명
	9	충청남도	독립 사무국 운영		전담 3명
	10	전라북도	노사단체 위탁운영	한노전북본부	전담 1명
	11	전라남도	노사단체 위탁운영	전남경총	전담 2명
	12	경상남도	노사단체 위탁운영	경남경총	겸직 4명
기초 (28개소)	1	광주광산구	지자체 내 설치 운영	전담인력 배치	전담 1명
	2	울산북구	지자체 내 설치 운영	전담인력 배치	전담 1명
	3	수원시	독립 사무국 운영		전담 3명
	4	성남시	노사단체 위탁운영	한노성남지부	겸직 1명
	5	부천시	독립 사무국 운영		전담 2명
	6	안양시	독립 사무국 운영		전담 2명
	7	안산시	독립 사무국 운영		전담 2명
	8	용인시	독립 사무국 운영		전담 2명
	9	이천시	독립 사무국 운영		전담 1명
	10	화성시	독립 사무국 운영		전담 2명
	11	시흥시	독립 사무국 운영		전담 2명
	12	원주시	노사단체 위탁운영	한노원주지부	전담 3명
	13	동해시	노사단체 위탁운영	한노동해지부	겸직 2명
	14	속초시	독립 사무국 운영		전담 1명
	15	삼척시	노사단체 위탁운영	한노삼척지부	전담 1명
	16	영월군	노사단체 위탁운영	한노영평정지부	겸직 2명
	17	청주시	독립 사무국 운영		전담 2명
	18	충주시	독립 사무국 운영		전담 2명
	19	제천시	독립 사무국 운영		전담 1명
	20	천안시	노사단체 위탁운영	한노천안지부	전담 2명
	21	아산시	독립 사무국 운영		전담 1명
	22	당진시	노사단체 위탁운영	한노충남서부지부	전담 2명
	23	여수시	노사단체 위탁운영	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	겸직 2명
	24	순천시	노사단체 위탁운영	순천상공회의소	겸직 2명
	25	광양시	노사단체 위탁운영	한노광양지부	겸직 1명
	26	포항시	독립 사무국 운영		전담 2명
	27	경주시	독립 사무국 운영		겸직 1명
	28	창원시	노사단체 위탁운영	한노 마산지부	겸직 1명

※ '19년 신규 개소: 안양시(4.10), 당진시(5.31), 세종특별자치시(8.1), 제주특별자치도(10월 예정)